

휴직자복무관리지침

제정 2021. 12.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휴직 중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휴직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진흥원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지침에서의 “휴직”이란 「인사규정」 제31조제1항의 휴직을 말한다.

제4조(휴직자 복무관리 교육) 인사담당부서는 「인사규정」 제31조제1항의 휴직예정자가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1. 휴직 중 복무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2. 휴직 실태 점검 시 협조사항
3. 휴직 사유 소멸 시 복직 의무 및 절차
4. 휴직 중 연락처의 신고
5.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 불이익 처분 유형 등

제5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휴직자는 휴직을 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휴직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인사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겸업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인사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인사규정」 제31조제1항의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6월,12월)로 한다. 다만, 휴직·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휴직 시작 후 3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
2. 복직 전 3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휴직 실태점검)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기간 동안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인사담당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 심사 및 검증) ① 원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결과와 휴직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인사규정」 제3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기준 휴직 중인 직원 및 이후 휴직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직 급				
2. 성 명(생년월일)				
3. 휴직종류				
4. 휴직기간				
5. 휴직중 겸업, 영리업무금지 위반여부	☐ 해당됨 ☐ 해당 없음			
	해당시	위반 내용		
		겸업 기간	0.00.00. ~ 00.00.00	
		영리 여부	☐ 영리 ☐ 비영리 ☐ 해당없음	
6. 해외체류 여부	휴직 중 해외 체류사실 해당여부(☐ 해당됨, ☐ 해당 없음)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 해당됨, ☐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교육(국외)휴직, 배우자 해외동반휴직 등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출국기간	00.00.00 ~ 00.00.00
			③ 출국목적	
7.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가능, ☐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해당됨, ☐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 해당됨, ☐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허용, ☐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 여부(☐ 해당됨, ☐ 해당 없음)			
8. 휴직자의 복무상황	<i>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i> ※ 겸업,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휴직자 실태 자체점검 결과

☐ 자체점검 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부서 및 점검자 :

○ 점검내용 :

※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 휴직의 충실성 여부 등 휴직 전반

☐ 자체점검 결과

구분	성명 (직급)	휴직 종류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등	비고
1				
2				
3				
4				